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 조항(예외) 신설 (안 제3조제1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‘단말기 유통법’이라 함) 시행령 제3조(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)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(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)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신설(안 제3조1호)
 -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이동통신사업자간 번호이동 등을 통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